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단266408, 2020가단4293, 2020가단213516 판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반소병합) 공사대금 · (반소병합)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피고(반소원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용조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591,06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3.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C에게 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19.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082,1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3,2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장인 아산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지붕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9. 2.부터 2019. 9. 11.까지, 도급금액 2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6,500,000원은 도급인의 검수확인 후 10일 이내)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30.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는 '수급인은 위 도급기간 내에 진행을 하되, 도급인이 의뢰한 F동 태양광모듈탈부착 도급업체와 협조할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일정은 도급인이 의뢰한 태양광모듈탈부착 업체의 일정에 따라 도급지연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것을 간주하되, 만약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도급인이 판단될 경우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고지 없이 이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제3자에게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이 의뢰한 태양광모듈탈부착시 정확한 꼭지점(볼트 및 너트 넣는 곳)을 표시하여 탈부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표시가 없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되, 도급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줄 부분이 있고, 반드시 F동 지붕공사에 하자 부분이 없도록 수급인도 태양광모듈탈부착 꼭지점 표시(볼트 및 너트 넣는 곳)한 곳에 고정 볼트 및 부자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단, 도급인도 이 공사와 관련하여 태양광모듈탈부착 시공업체에도 이에 대한 표기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하며, 도급기간은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나 수급인도 지붕공사를 완료 후 태양광모듈탈부착 지점 꼭지점에 고정 볼트 및 부자재를 설치한다', 제6조는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도급인이 체결하는 F동 태양광모듈탈부착업체와의 공사기간 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하고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으며, 의견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메일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의견 조율하되,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지붕방수공사 전 태양광모듈을 탈거하고 위 지붕방수공사 후 태양광모듈을 부착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8. 26.부터 2019. 9. 20.까지, 도급금액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000원, 잔금 8,000,000원은 도급인의 검수확인 후 10일 이내)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4.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는 '수급인은 위 도급기간 내에 진행을 하되, 도급인이 의뢰한 F동 지붕 패널 방수공사와 협조할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일정은 도급인이 의뢰한 판넬 시공 업체의 일정에 따라 도급지연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것을 간주하되, 만약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도급인이 판단될 경우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고지 없이 이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제3자에게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이 의뢰한 태양광모듈탈부착시 정확한 꼭지점(볼트 및 너트 넣는 곳)을 표시하여 탈부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표시가 없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되, 도급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판넬시공업체에도 제시를 해주는 부분으로 인하여, 반드시 F동 지붕공사에 하자 부분이 없도록 수급인이 꼭지점 표시(볼트 및 너트 넣는 곳)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도급인도 이 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시공업체에도 이에 대한 표기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하며, 도급기간은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나 판넬 시공 업체가 지붕공사를 완료 후 부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6조는 '수급인은 도급을 착수하기 전후에 도급인이 체결하는 F동 지붕 판넬 시공 업체와의 공사기간 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하고(태양광 판 탈착기간 및 부착기간-부착기간은 판넬공사 기간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도 있으나 판넬공사기간 마무리 후 1주일 이내 마무리한다)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으며, 의견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메일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의견 조율하되,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지붕은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되어 있었고, 판넬지붕 위에는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C는 2019. 8. 26.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모듈과 지붕을 연결하는 빔볼트(지붕과 태양광모듈을 연결하는 볼트로서 길이가 약 23cm 정도 됨)를 제거한 후 태양광지지대 및 태양광모듈을 철거하였다.

라. 2019. 9. 2.경부터 피고 B이 위 판넬지붕 위에 흘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2019. 9. 7.경 태풍 링링에 의한 강풍으로 인해 작업 중이던 약 50여개의 판넬이 날아가고 그로 인하여 인근 G 소유의 집기 및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별지1 손해배상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82,135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9. 10. 17.경까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지붕방수공사 및 태양광모듈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21. 위 도급계약에 기한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 8, 10, 14 내지 22호증, 을나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각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호 의견조율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공장 지붕의 결속(볼트체결)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B은 홀강판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지붕외장재를 지붕구조부재에 스크류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채로 위 지붕을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 C는 위 공사 당시 태풍이 예보되어 있던 상황임에도 해체되어 있던 빔볼트를 그대로 두어 태풍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 및 위와 같은 지붕 시공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던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상회복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잔여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및 위 도급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비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위 각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지붕의 빔볼트는 이 사건 공장 구조부재, 지붕외장재, 태양광 모듈판 지지대 3개 부분을 동시에 체결한 볼트이나 태양광 모듈판이 강풍에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일체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반면 이 사건 공장 지붕과 맞닿아 있는 다른 지붕 혹은 원고 소유의 다른 공장 건물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류볼트는 지붕판넬과 지붕 구조부재인 퍼린 사이를 체결한 것으로, 이는 지붕외장재가 강풍에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지붕 구조부재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볼트이나, 피고 B이 홀강판을 시공하던 이 사건 지붕에는 스크류볼트가 사라진 상태이고 오로지 기존판넬과 홀강판이 피스로만 간헐적으로 결속되어 있었으며, 홀강판 겹침 부분에 실크테이프 및 실리콘으로 밀착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접합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여 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사고 당시 외부에서 불어 닥친 강풍이 지붕 가장자리의 접합부분 및 용마루 후레싱 사이의 틈새 사이로 침투하여 용마루 및 홀강판이 우선 상향으로 인발되고 그 인발력의 가중으로 하부에 있는 기존 지붕판넬을 끌어올리며 지붕외장재가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공장 지붕 외 스크류볼트가 설치되어 있던 공장 지붕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 구조체와 지붕의 결속을 위하여 스크류볼트 체결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공장 지붕 외의 다른 지붕에는 모두 스크류볼트가 체결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장 지붕에도 스크류볼트가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C가 빔볼트를 제거하고 태양광 지지대 및 태양광모듈판을 철거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공장 지붕에 홀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 판넬지붕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류볼트 및 캡을 제거하고 홀강판을 덧씌운 이후에도 스크류볼트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홀강판 겹침 부분을 밀실시공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6조는 피고들 사이의 일정 협조 의무, 볼트 및 너트 넣는 꼭지점 표시의무 및 꼭지점 표시한 곳에 고정 볼트 및 부자재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C가 제거한 빔볼트는 태양광 모듈판이 강풍에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일체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점, 위 사고 당시 작업 공정상 빔볼트를 체결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 C는 이 사건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지지대 및 태양광모듈을 제거한 후 피고 B이 덧댄 홀강판 위에 이를 다시 설치하는 공정만 담당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사고 당시 제거된 빔볼트를 임시적으로나마 결속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로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해서도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자연재해 기여도, 위 사고의 발생 경위, 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지붕 및 맞닿아 있는 지붕, 지붕 위의 태양광모듈이 각 손상되고, 인근에 있던 G 소유의 집기 및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지 손해배상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82,135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통상 생길 수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 B이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장 지붕방수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원고는 별지2 손해내역 기재와 같이 2019년 9월분, 같은 해 10월분, 같은 해 11월분의 태양광발전 수익 합계 17,600,000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수익 합계 17,6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방수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태양광발전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591,067원(=39,182,135원×5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21.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1. 8. 2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9. 10. 17.경까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지붕방수공사 및 태양광모듈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위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기존 판넬지붕 수리를, 피고 C는 위 사고로 훼손된 이 사건 공장 지붕 외의 부분에 대한 태양광판넬에 대한 수리를 각 거절하였는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위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한 공사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각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도급계약상 해제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반소 청구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상 잔금 16,500,000원과 원고가 요구한 바에 따라 출강판을 재시공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든 추가공사대금 6,715,000원을 합한 23,21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9. 10. 17.경까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지붕방수공사 및 태양광모듈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2, 7, 8, 12 내지 16호층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 시행 여부, 추가공사대금의 적정성,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지급합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도급계약상 잔금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반소 청구

피고들이 2019. 10. 17.경까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지붕방수공사 및 태양광모듈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도급계약상 잔금 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피고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행청구한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1. 25.까지는 피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별지1

손해배상내역

순번	공사업체	공사내용	공사대금(원)
1	주식회사 I	이 사건 공장 지붕보수공사	17,839,140
2	J	이 사건 공장 전등교체	193,270
3	K회사(L)	G 컨테이너 보수	550,000
4	M회사(N)	G 방충망 보수	132,000
5	O회사(P)	폐기물 수거	1,210,000
6	Q회사(R)	천막 교체	550,000
7	S 주식회사	태양광모듈 구입	6,930,000
8	T회사 U	태양광모듈 교체공사	8,800,000
9	차량 파손 손해배상금	차량 수리비	777,725
10	주식회사 V	스크류볼트 시공을 위한 태양광패널 탈부착 공사금액	2,200,000
		합계	39,182,135

별지2

손해내역

순번	업체	손해내용	손해액(원)
1	한국전력공사	태양광발전 손실(09월분)	2,200,000
2		태양광발전 손실(10월분)	3,300,000
3		태양광발전 손실(11월분)	3,300,000
4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 REC손실(09월분)	2,200,000
5		태양광발전 REC손실(10월분)	3,300,000
6		태양광발전 REC손실(11월분)	3,300,000
		합계	17,600,000

